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의무사항 (50인, 100인, 300인 등)

법령 약어

장애인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평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퇴직금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령자고용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구분	관련조항	준수여부 점검사항	적용 범위 (상시 사용 근로자 수)	내용	비고
산업안전보건법	1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최소) 50인 이상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 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 근로자의 유해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함.	
	17	안전관리자	(최소) 50인 이상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안전관리자 업무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	
	18	보건관리자	(최소) 50인 이상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보건관리자 업무 :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	
	22	산업보건의	(최소) 50인 이상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함. 산업보건의 업무 :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	
	2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최소) 50인 이상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25	안전보건관리규정	(최소) 100인 이상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유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함.	
	6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최소) 100인 이상	(관계수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	
	(시행령) 16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300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자가 해당 업무를 전담해야 함.	
장애인법	28	의무고용	50인 이상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에 일정비율을 곱한 수 만큼 장애인을 고용해야 함.	
	79	국가 · 지자체의 의무고용	50인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이 공무원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 수의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함.	
	제5조의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 제출	50인 이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전년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음.	
	제5조의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교육자료 등을 배포 ·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방식으로 인식개선교육을 <u>실시할 수 없음.</u>	
	33	고용의무 위반시 부담금	100인 이상	상시 1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6	고용형태 현황 공시	300인 이상	매년 3월 31일 기준 아래사항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시 1.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2. 사업주가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3. 사업주가 고용한 단시간 근로자 4. 다른 사업주가 고용하고, 사업주가 사용하는 파견근로자	
고평법	제17조의3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시행계획 수립 · 제출의무	(최소) 300인 이상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상시 아래 규모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상시 300인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닌 경우) 상시 500인 이상	
퇴직금법	제18조의2	적립금운용위원회	300인 이상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제18조의2	적립금운용계획서	300인 이상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해야 함.	
영유아 보육법	14	직장 어린이집 설치	(최소) 300인 이상	아래 규모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함. 1.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2.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고령자 고용법	20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의무	300인 이상	사업주는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제출해야 함.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4	안전보건전담조직	500인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내지 제19조, 제22조에 따라 두어야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안전 ·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함.	